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21 선고 2016가단5210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1. K종회

2. L

3. M

4. N

5. O

6. P

7. Q

8. R

9. S

10. T

11. U

12. V

13. W

14. X

15. Y

16. Z

17. AA

18. AB

19. AC

20. AD

21. AE

22. AF

23. AG

24. AH

변론 종결 2017. 10. 31.

판결 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K중회는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중회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K총회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K총회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K총회(이하 '피고 총중'이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합유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총중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피고 총중은 명의수탁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총중은 피고 L, M, N, O, 망 AI, 망 AJ에게 총중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총중은 2013. 4. 4. 총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명의수탁자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총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이를 새로운 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총중은 2017. 9. 24.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종전 명의신탁계약의 수탁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은 새로운 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7. 선고 2016다229614 판결,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다266521 판결 등 참조).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재익

별지